

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

의안 번호	2019-128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일자 : 2019. 11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 교육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근거법령 : 「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
- 대 상 :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(이사장 구인모)
- 사 업 비 : 665,000천원(출연 예정금액)
- 2020 예산편성 요구사항

사업기간	2019년 예산액	2020년 요구액*	재 원 별				
			계	균 특	도 비	균 비	기 타
2020년	665	665	665			665	

- 사업내용 :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,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등

나. 부서의견

- 「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군 장학사업의 출연금 지원으로,
- 거창군의 지역인재를 발굴·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거창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3. 관련법규 및 조례

- 교육기본법,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-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: 붙임 1

4. 참고사항

- 출연기관 현황 : 붙임 2

관 계 법 령

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
(행정복지국 인구교육과) (시행일 : 2019.04.03)

(제정) 2005.10.05 조례 제1761호

(일부개정) 2008.01.14 조례 제1878호

(전부개정) 2011.01.05 조례 제2014호

(일부개정) 2014.12.31 조례 제2228호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4조

(일부개정) 2019.04.03 조례 제2496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,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할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의 설립과 그 운영·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립)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(이하 “장학회”라 한다)는 「민법」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.

제3조(정관) 장학회의 정관은 「민법」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한다.

제4조 삭제<2019.4.3.>

제5조 삭제<2019.4.3.>

제6조 삭제<2019.4.3.>

제7조(사업)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
2. 지역인재 육성·지원사업
3. 교육여건 개선사업
4. 국내·외 청소년과의 교류사업
5.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장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8조(재산의 조성)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거창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
2. 개인·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
3.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경영을 통한 수익금
4. 그 밖의 수입금

제9조(재정지원) ①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장학회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,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「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(타조례개정 2014.12.31.)

제10조(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등)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·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행정지원) 군수는 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

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장학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장학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(공무원의 인력지원)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인력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 군수는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·회계·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장학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4조 삭제<2019.4.3.>

부칙 <전부개정 2011.01.05, 조례 제2014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.

부칙(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.12.31.)

제1조 ~ 제3조 (생략)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

⑩ 「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 「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」 ”를 “ 「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 ”로 한다.

부칙(조례 제2496호 2019.4.3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 출연기관 현황 】

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

설립근거	법률 : 교육기본법,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: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례 :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			전화번호 : 055-940-8812			
				홈페이지 : www.gcdream.kr			
주요연혁	설립연도 : 2005. 12. 16. 장학기금 100억원 달성 : 2009년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출연			
인원현황 (‘19. 9.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비정규직			
	17명		0명	17명			
임원 (‘19. 9. 기준)	직책 (직책명)	성명 (익명처리)	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	임기 (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)			
	이사장	구○○	거창군수	당연직(재직기간)			
	상임이사	신○○	前) 민주평통회장	2018.12.03. ~ 2020.12.02.			
	비상임이사	이○○	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	당연직(재직기간)			
		이○○	아립노인요양원 원장	2017.12.20. ~ 2019.12.19.			
		송○○	前) 창호초등학교 교장	2017.12.20. ~ 2019.12.19.			
		김○○	덕유농산 대표	2017.12.20. ~ 2019.12.19.			
		오○○	前) 거창중학교 교장	2018.12.03. ~ 2020.12.02.			
		최○○	아립인쇄사 대표	2018.12.03. ~ 2020.12.02.			
		백○○	거창한뉴스 대표	2018.08.22. ~ 2020.08.21.			
		양○○	前) 의용소방연합회 회장	2017.12.20. ~ 2019.12.19.			
		백○○	거창농산 대표	2017.12.20. ~ 2019.12.19.			
		송○○	거창군이장자율협의회 회장	2018.08.22. ~ 2019.12.19.			
		김○○	거창푸드종합센터 이사장	2017.12.20. ~ 2019.12.19.			
		이○○	前) 함께하는 거창 대표	2017.12.20. ~ 2019.12.19.			
	감사	백○○	前) 교장	2018.01.03. ~ 2020.01.02.			
유○○		푸른산내들 이사	2017.12.20. ~ 2019.12.19.				
	표○○	前) YMCA 이사장	2017.12.20. ~ 2019.12.19.				
주요기능	-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필요한 지원						
자본금 ¹⁾ (단위:백만원)	10,000 (직전연도말 기준)			출자·출연액 (단위:백만원)	11,421 (직전연도말 기준)	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17	2018	2019	재무현황 (백만원) ‘18.12.31기준	자산	10,686 (자산 총액)
	예산액 ²⁾	11,083	11,122	11,299		부채	0 (부채 총액)
	지자체 지원액 ³⁾	665	665	665		자본 ¹⁾	10,686 (자본금 총액)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‘18. 12. 31. 기준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
	1,234			1,038		196	

1) 자본금은 자본(자산-부채)의 한 부분이며, 자본은 자본금, 자본잉여금,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

2」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

3」 해당 기관 예산액(2」 번항목)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